

디지털 무역규범의 국제적 논의에 관한 연구

황지현¹, 김용일^{2*}

¹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²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Discussion of Digital Trade Norms

Ji-Hyeon Hwang¹, Yong-Il Kim^{2*}

¹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약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하에서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디지털 통상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무역규범 정립을 위한 논의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고려한 디지털 무역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통상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취하고, EU는 GDPR을 발효하였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디지털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주요국들이 도입한 디지털세에 관하여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OECD와 G20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을 고찰하고, 디지털 무역의 핵심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디지털무역, 전자상거래, 국경간 데이터 이전,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세

Abstract With the spread of digital trade, the share of digital trade under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s increasing. However, since there is no international digital trade standard, the discussion to establish a new trade rule has important significance.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implementing digital trade policies in consideration of their own interests, but different regulatory policies are causing trade conflicts. In order to provide safeguards agains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due to the free movement of data across borders,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aken measures to localize data, and the EU has enacted GDPR. And the United States regards the imposition of the digital tax as a trade barrier, and some countries oppose the implementation of the digital tax for fear of negative impact on their countries. However, discussions on the global digital tax, centered on the OECD and the G20 are making progress. As it is highly likely that a digital tax agreement will be drawn up within this year, countermeasures must also be prepare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Korea's trade policy by examining recent trends in digital trade norms and analyzing major issues in digital trade.

Key Words : Digital Trade, E-Commerce, Cross-border Data Flows, Privacy Act, Digital Tax

*This paper was supported by research funds for newly appointed professors of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in 2020.

*Corresponding Author : Yong-Il Kim(kyi0407@ut.ac.kr)

Received August 23,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September 23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1. 서론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거래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디지털화로 세계 각국은 디지털 무역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디지털 무역 기반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고, 2020년 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 미국, EU 등과 같은 세계 주요국들도 디지털 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CPTPP와 USMCA처럼 디지털 무역 규정을 명시한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이 확대되고 있으며, 디지털무역협정(Digital Trade Agreement)도 체결하고 있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은 2021년 1월 7일 발효하였으며, 우리나라도 가입을 추진 중이다.

글로벌 통상환경 하 디지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다자간 디지털 무역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디지털 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WTO 차원의 규범이 부재한 상황이므로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위해 WTO 전자상거래 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WTO 회원국들의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시각 차이로 협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세계 각국도 디지털 무역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있으나 상이한 규제정책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규제정책은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되어 국가 간 통상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 최근 각국의 디지털 무역정책은 디지털 기업들이 국가 간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추세이다. 특히 디지털 무역의 핵심 이슈인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 디지털 세 등에 대하여 국가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무역규범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WTO의 전자상거래 협상 진행 상황 및 선진화된 디지털 무역 규범으로 평가되는 CPTPP와 USMCA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계 주요국들의 디지털 무역

규범과 디지털 무역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를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디지털 기업에게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 통상정책 방향에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디지털 무역 규범의 최근 동향

2.1. WTO

1995년 WTO가 출범한 이래 아직까지 국제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이 마련되지 않았다. 1998년 2월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화를 제안하면서¹⁾ WTO에서 공식적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후 WTO는 1998년 5월에 스위스 제네바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관한 선언을 채택한 후 전자상거래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일반이사회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주요 이슈들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나 쟁점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립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17년 12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제 11차 WTO 각료회의(MC-11)가 개최되기 전에 MC-11의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선진국은 전자상거래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아프리카 등 최빈개도국은 디지털 격차를 지적하며 디지털 기반시설 구축을 강조하면서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1]. 전자상거래 규범 정립에 관한 회원국간의 이견 등으로 MC-11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논의는 회원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기만 했을 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MC-11에서는 차기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에 관한 기존의 무관세 유지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일본, 노르웨이, 싱가포르, 러시아 등 71개 회원국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협상을 위한 전자상거래 주요 의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2018년 3월부터 각 주체별로 전자상거래 무역 관련한 탐색적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등은 공동선언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관련

1) 이후 전자적 전송에 관한 한시적 무관세 관행이 계속 연장되어 왔으나, 2017년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향후 무관세 관행의 영구화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 될 전망이다.

회의에는 참여하고 있다.

MC-11 이후 논의된 무역 관련한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한시적 무관세를 영구적으로 무관세화하자는 주장과 관세 수입 감소를 우려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둘째, 사이버 보안, 강제적인 기술이전 금지,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의 보호 등에 대해 국제적인 규범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셋째, 국경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을 위해 WTO에서 새로운 규범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복잡한 이슈로 국제적인 규범 마련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넷째, 오프라인에서 공급이 허용되는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공급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팸 메시지로부터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지식재산권보호 등의 이슈가 있다.

WTO 전자상거래 협상 참여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그동안의 협상내용을 취합한 WTO 전자상거래 협상용 통합문서는 Section A(전자상거래 원활화), Section B(개방과 전자상거래), Section C(신뢰와 전자상거래), Section D(공통 이슈), Section E(통신), Section F(시장접근)의 6개 분야와 부속서(Annex 1)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가 개최될 예정이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관련하여 각국의 이해관계로 인해 높은 수준의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 WTO 협상참여국들의 전자상거래 관련한 국내법 제정 현황 및 수준이 상이하고, 디지털 무역규범의 핵심 쟁점에 관해 국가별로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리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하에서 WTO 디지털 무역 규범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 및 범위에 논쟁의 소지가 있다. WTO 디지털 무역 규범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향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 USMCA

NAFTA를 개정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이하 USMCA)이 2020년 7월 1일 발효하였다. USMCA에는 NAFTA에 없었던 디지털 무역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장

(Chapter 19)으로 명시되어 있다. USMCA의 디지털 무역 규정은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2].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은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USMCA는 디지털 무역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바, 내용면에서 USMCA의 디지털 무역 규정은 기존의 지역무역협정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선진화된 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USMCA의 디지털 무역 규정은 제19장에 1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TPP(현 CPTPP) 제14장 전자상거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일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USMCA의 디지털 무역 규범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디지털 무역의 적용범위 및 예외(제19.2조), 디지털 제품의 무관세(제19.3조),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제19.4조),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과 일치(제19.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제19.6조), 소비자보호(제19.7조), 개인정보 보호(제19.8조),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제19.11조),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localization) 요구 금지(제19.12조), 사이버 보안(제19.15조),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제19.16조), 인터넷 컴퓨터 서비스(제19.17조), 공공데이터 접근 촉진(제19.18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USMCA 디지털 무역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디지털 무역 규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전달 또는 수행되는 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투자(Chapter 14), 서비스무역(Chapter 15), 금융서비스(Chapter 17) 장도 적용될 수 있다[3]. 디지털 제품의 비차별대우 예외 범위는 정부 보조금만이며, 주요 쟁점인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보장과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 금지 및 소스코드 공개 요구 금지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4]. 금융서비스 기업까지도 컴퓨팅 설비의 지역화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소스코드 안의 알고리즘에 대한 정부의 공개 요구도 금지하고 있다.

최근 이슈화된 사건으로 중국이 사이버보안법을 이유로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IT기업에게 소스코드 공개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USMCA는 소스코드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 공개 요구 금지를 의무화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규율 범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USMCA는 인터넷 플랫폼

품 이용자의 행위로 인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면책, 즉 민사 책임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CPTPP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USMCA의 디지털 무역 규범은 CPTPP의 전자상거래 규정을 기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CPTPP의 내용과 유사하나,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 수준이 상당히 높은 CPTPP보다 진일보한 디지털 무역 규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USMCA는 향후 디지털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무역 질서를 규율할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3. TPP(현 CPTPP)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논의되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2015년 타결되었으나, 2017년 미국이 공식적으로 탈퇴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다시 협상을 추진하여 일본 주도하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하였다. TPP는 전자상거래 규정을 독립된 장(Chapter 14)으로 명시하였는데, 새로운 디지털 무역 규범으로서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다루고 있는 본 규정은 이후 체결되고 있는 디지털 무역 협정에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TPP는 전자상거래 규정은 18개의 조항으로 일반규정, 의무규정, 협력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규정은 2개 조항으로 정의 조항(제14.1조)과 적용범위 및 일반조항(제14.2조)으로 구성된다. 의무규정은 11개 조항으로 관세(제14.3조),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대우(제14.4조), 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또는 UN 전자통신협약의 원칙과 일치(제14.5조), 전자인증 및 전자서명(제14.6조), 온라인 소비자보호(제14.7조), 개인정보보호(제14.8조), 국경 간 정보 이전(제14.11조), 컴퓨팅설비의 지역화(제14.13조), 원하지 않는 상업적 전자메시지(제14.14조), 소스코드(제14.17조), 분쟁해결(제14.18조)으로 구성된다. 협력규정은 5개 조항으로 종이 없는 무역(제14.9조), 전자상거래 관련 인터넷 접근 및 이용(제14.10조), 인터넷 상호접속료 분담(제14.12조), 회원국간 협력(제14.15조),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제14.16조)으로 구성된다.

TPP 전자상거래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전자상거래 규정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단, 정부조달 또는 정부에 의해 보유·처리되는 정보나 정보의 수집과

관련된 조치에 대하여 전자상거래(제14장)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5]. 전자적으로 전송된 콘텐츠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해서는 안되지만 내국세 및 수수료, 기타 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 쟁점인 국경 간 정보 이동을 협력규정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의무규정으로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역시 의무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이를 강화하고 있다[6]. 또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이전 또는 접근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공공정책의 목적 달성 이외에는 컴퓨팅설비의 현지화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정인 TPP의 전자상거래 규정은 여타 FTA 전자상거래 규정들과 비교하여 법적 구속력이 강한 의무규정이 많고, 디지털 보호 무역 규범이 아닌 디지털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내용들로 다자간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규범으로 평가된다.

3. 디지털 무역 규범의 주요 이슈

3.1.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중요하다. 그러나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 영국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업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mbridge Analytica)는 8천 7백만 명의 페이스북(Facebook)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들의 동의 없이 수집해 악용하고, 미국 대통령 선거와 영국 브렉시트 국민투표 등에도 임의로 사용하였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하여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2018년 영국의 정보위원회(ICO)는 본사에 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고, 2019년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본사에 5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본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아졌으며, 기업들의 자유로운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보호라는 딜레마 속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이 논의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 환경하에서 국경 간 데이터의 이동 규모는 증가하였고, 이를 제한하는 데이터 지역화 조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지역화 조치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다.

중국은 2017년 6월 1일 사이버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시행하였고,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데이터 규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에 관한 규정은 2018년까지 유예되었고, 사이버보안법의 데이터 지역화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발효하였다. 본 규정은 중국에서 외국으로 개인정보나 주요 데이터의 이전시 중국정부의 안전심사를 받아야 하며, 중국 내에서 수집·생성된 개인정보 및 핵심 데이터는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러시아 역시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하여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자국 내 서버에 저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이전을 제한하고 데이터를 현지화하였다.

유럽연합(EU)은 2018년 5월 25일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발효하였다. GDPR은 EU 회원국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GDPR은 개인정보보호를 전제로 EU 역내에서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다[7]. 그러나 EU 역외로 데이터를 이전시에는 상대국이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경우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명시적인 동의가 있다면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8]. 그러나 GDPR은 자국 내 서버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1월 1일에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을 발효하였는데, EU GDPR의 축소판으로 평가되고 있다[9].

미국과 EU는 2000년 10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라는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본 협정에 따르면 미국기업들이 상무부에 등록하고 관련 요건을 준수하면 EU와 미국 간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었다. EU는 7가지(고지·선택·제공·안정성·데이터 무결성·접근·집행)의 세이프 하버 요건을 제시하였고, 동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기업은 EU의 개인정보보호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간주되어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었다.

그러나 페이스북 사용자였던 막스 슈렘스(Maximillian Schrems)는 페이스북이 유럽 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세이프 하버 협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했던 에드워드 조지프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이루어진 NSA의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수집을 2013년 6월에 폭로하면서 본 협정에 대한 논란이 더 심화되었다. EU 지침에 의하면,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수준을 갖춘 경우에 제3국으로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본 협정이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보고, 본 협정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렸다(Case C-362/14, Maximillian Schrems v Data Protection Commissioner, 2015). 세이프 하버의 효력 상실로 EU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없게 되자 4,000여 개의 미국기업들은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이에 미국은 개인정보 공유 및 전송을 위해 기존의 세이프 하버를 대체하는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 협정을 EU에 제안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16년 7월 데이터 전송 협정인 프라이버시 실드에 대해 적정성 결정을 내렸으나, CJEU는 2020년 7월 미국이 EU GDPR 제45조와 제46조에 의해 요구되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보호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본 협정을 무효화 하였다. 프라이버시 실드 무효화라는 판결에 따라 미국과 EU 간의 데이터 이전 메커니즘에 관한 재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미국 등은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인 데이터 지역화 수단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를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10]. 이러한 조치들은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고 비용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CPTPP와 USMCA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디지털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2. 디지털세

OECD와 G20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에 디지털세(Digital Tax)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디지털세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얻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디지털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이윤이 발생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업들은 기존의 전통기업들보다 훨씬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조세형평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법인세는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디지털 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이외에 여러 국가에서 이익이 창출되고 있으므로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디지털 기업들은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지사를 설립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기도 한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인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였고, 2020년 1월 고정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시장 소재지국의 과세권을 인정하는 통합접근법(Pillar 1)과 글로벌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하한선을 정하여 국가 간 조세경쟁을 막는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2)를 발표하였다. 저세율국가와 조세피난처(Tax Haven) 국가들의 반대가 우려되지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된 만큼 BEPS의 최종적인 합의안은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세 합의안이 도출되더라도 디지털세 이행을 둘러싸고 국가 간 갈등이 점화될 수 있다.

디지털세는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지만 EU 회원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디지털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가별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19년에 프랑스(3%)가 EU 회원국 중 가장 먼저 디지털세를 도입하였다. 2020년에는 이탈리아(3%), 터키(7.5%), 오스트리아(5%), 영국(2%), 폴란드(1.5%), 뉴질랜드(3%), 말레이시아(6%), 인도(온라인 광고 매출액의 6%, 전자상거래 매출액의 2%) 등이 디지털세를 도입하였고, 2021년에는 스페인(3%), 브라질(1~5%) 등이 디지털세를 도입하였다[11]. 디지털세는 글로벌 매출액과 국내 매출액이 고려되어 부과되며, 과세 대상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온라인 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이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는 국가들도

있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 회피처 국가로 선호되고 있는데 향후 디지털세를 부과할 경우 자국 내 디지털 기업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그리스, 독일 등도 자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세 부과를 차별적인 조치인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고 있다. 디지털세의 부과 대상이 주로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인 상황에서 각국의 디지털세 도입이 확산되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하여 디지털세 부과는 불공정한 관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USTR은 디지털세는 차별적인 조치로 국제조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2019년 12월 프랑스에, 2021년 6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영국, 스페인, 터키, 인도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과 디지털세 도입 국가들은 조세 부과 및 보복관세의 실행을 상호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이들의 갈등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2021년 2월에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국은 BEPS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Pillar 1에 대한 세이프 하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G7 국가는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최소 15% 이상으로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디지털세의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월 기획재정부는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고, 2024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국제적인 합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향후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서는 적용할 과세 기준 및 과세 대상, 디지털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등의 쟁점들이 아직 남아있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합의 또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4. 결론

디지털 무역의 확산으로 디지털 통상규범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무역에서 핵심 쟁점은 국경 간 데이터 이동이다. 이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국가별로 상이한 데이터 규정에 대응해

야 하는 상황이므로 비용 및 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효된 USMCA와 CPTPP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보장과 데이터 지역화 요구 금지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함으로써 데이터 규제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고, 중국 등은 데이터 지역화 조치를 선택하였다. EU는 GDPR을 발효하였는데, GDPR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인식할 수도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하고 대응력을 높인다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도와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나라도 데이터 3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세에 관한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면서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디지털세 합의안이 연내에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세를 무역장벽으로 간주하거나 자국 내 디지털 기업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디지털세 도입을 반대하는 국가들의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세 합의안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아직 남아있으나, 합의안이 조속히 타결된다면 글로벌 조세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BEPS 최종안이 도출되면 우리나라는 국내법 및 조세조약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며, 대응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세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가들이 현재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이를 규율할 새로운 통상규범을 마련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국제적인 디지털 무역 규범 정립을 통해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디지털 무역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WTO에서 디지털 무역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협상을 위한 탐색적 회의만 이루어졌을 뿐, 사안별로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달라 아직 특별한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통일된 디지

털 무역 규범을 위해서는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들의 조속한 합의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및 합의 상황을 주시하며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향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세계 주요국들의 디지털 무역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무역을 증시하는 국가들은 지역무역협정에 디지털 무역규정을 명시하거나 별도의 디지털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무역규정이 명시된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거나 주요국들과 디지털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REFERENCES

- [1] J. P. Meltzer. (2019). *A WTO reform agenda: Data flows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at Brookings Institution, 1-18.
- [2] B. H. Malkawi. (2021). Digital Trade Issues in WTO Jurisprudence and the USMCA. *The International Trade Journal*, 35(1), 123-131. DOI : 10.1080/08853908.2020.1801536
- [3] H. C. Kim. (2020). A Study of New Trade Rules in the USMCA. *International Trade Law*, 147, 158-199.
- [4] H. B. Min. (2020). Digital Trade and Trade Norms: Analysis on the Data Trade Norms of USMCA. *Law Research Institu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63, 469-496.
- [5] R. Wolfe. (2019). Learning About Digital Trade: Privacy and E-Commerce in CETA and TPP. *World Trade Review*, 18(S1), s63-s84. DOI : 10.1017/S1474745618000435
- [6] J. M. Lee. (2020). Systemic Mismatches between Digital Trade and Conventional Trade Agreements: Controversies over Regu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Security Exceptions.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65(2), 227-262.
- [7] K. H. Woo & S. S. Shin. (2020). A Study on the Liberalization of Digital Trade and Trade Restrictiveness Factors of Data Privacy : Focusing on EU GDPR. *Korea Trade Research Association*, 45(3), 71-89.

- [8] H. Bentzen & N. Høstmælingen. (2019). Balancing Protection and Free Movement of Personal Data: The New European Union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70(5), 335-337.
DOI : 10.7326/M18-2782
- [9] H. J. Shin (2020). A Study on Recent Trends in Digital Trade Rules and Implications fo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16)2, 491-520.
DOI : 10.16980/jitc.16.2.202004.491.
- [10] CRS Report. (2019). *Digital Trade and U.S. Trade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41.
- [11] S. J. Yea & T. H. Oh. (2021). *Latest Digital Tax Discussion Trends and Implications*. KIEP(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Research Report, 1-14.

황 지 현(Ji-Hyeon Hwang) [정회원]



- 2015년 2월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경제학박사)
- 2020년 3월 ~ 현재 : 강릉원주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국제통상, 무역실무, 국제상사중재, 국제거래법
- E-Mail : jhhwang@gwnu.ac.kr

김 용 일(Yong-Il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경영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한국교통대학교 국제통상전공 교수
- 관심분야 : 국제통상, 국제상사 및 투자중재, 무역법규
- E-Mail : kyi0407@ut.ac.kr